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『120교통불편신고』행정처분6월 (법인택시- 심의회)

- 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교통민원신고된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, 제49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) 와 관련하여,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한 후,
- 2. 「서대문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(2016.06.21)」의 심의 결과 및 서울시 조사. 단속 과정에서 '행정처분확정'으로 이첩된 사항을 반영하여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),제4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.

□ 행정처분 내역

계(건)	운전자과태료(과징금)		자진납부		주의	불문	처분불가	재심
	건	금액(천원)	건	금액(천원)	건	건	건	건
20	2	300	0	0	13	4	1	0

- 첨부 1. 120 교통민원신고 행정처분내역 1부.
 - 2. 회의록 요약서(비공개) 1부
 - 3. 싞의조서 1부. 끝.

주무관	임주홍	운수지도팀장	代김창열	교통관리과장	문석만	안전건설교통국장	06/22 김종두
협조자							
시행 교통	관리과-18250	() 접수		()
우 03718 전화 330-18		문구 연희로 248 건송	/ ju	//http:// mks21@sdm.go.l	www.sdm.go	.kr / 부분공개(6)	